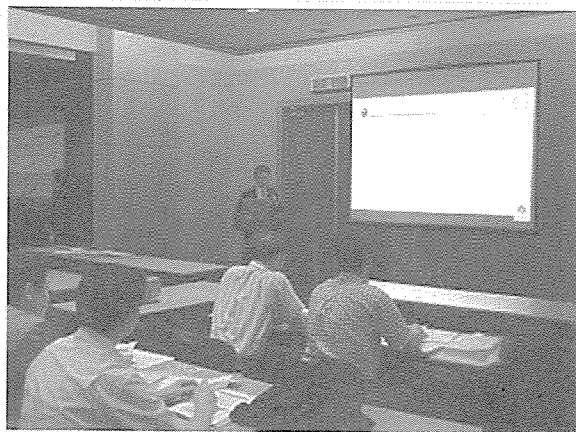


◆ '2006 물류비즈니스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



2006년 7월 4일 국내의 물류산업의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2006 물류비즈니스전시회 및 컨퍼런스”가 7월 6일부터 9일까지 삼성동 COEX에서 개최 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물류운송 및 보관, 시스템 등에 관련된 물류장비와 기기, 물류 IT 솔루션 및 제품, 물류서비스가 전시되어 물류 및 운송업계간 최신 기술정보 교류와 비즈니스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특히 기업의 물류현장 및 운반 장비로 주로 쓰이는 지게차, 스택어, 크레인, 호이스트, 로더, 컨베이어, 자동문, 컨테이너 등 우수 장비 및 설비 전시가 이루어지고, 최신 PDA, 바코드프린터, RFID, 물류관리시스템 등 물류 IT 장비 및 시스템 등이 전시된다. 특히, 물류 및 유통업계의 근간이 되고 있는 ‘SCM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물류서비스의 기업사례 발표도 진행 되었다.

또한 물류분야의 다양한 컨퍼런스 행사가 동시 개최될 예정이어서 물류정보교류를 위

한 국내 기업체 물류관계자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6일 개최되는 한국SCM학회의 전문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7일에는 물류IT(기업별 사례발표), 물류첨단기술개발사례 및 종합토론(물류산학연합회 주최), 파렛트와 유닛로드 시스템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주최)의 주제로 컨퍼런스가 개최되며, 8일에는 국내 물류경쟁력 강화전략을 위한 세미나(한국물류학회 주최)가 진행 되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물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업간의 정보교류의 장이 되는 것은 물론 최근 중요시되는 물류아웃소싱의 확대를 기반으로 일반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제3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진행



지난 7월 14일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회의실에서는 제 3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 산업대상 서류심사가 이루어졌다.

파렛트와 컨테이너를 대상으로한 이번 시상식은 유닛로드(사용부문)과 표준품질(생산부분) 그리고 공로상(개인/단체)로 구분되어 대상, 금상, 우수상의 3가지 수상과 그에 따른 상장 및 트로피가 수여된다.

서류심사를 포함한 현장심사는 7월 31일 이전으로 모든 심사가 진행 마무리 되었고 최종심사는 8월 10일 진행 되었으며 제 3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 산업대상 시상식은 9월 8일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개최된다.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큰 폭 인상

재활용 가능품목은 자발적으로 재활용시 부담금 면제

껌, 살충제, 유독물 용기 등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으면서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제품과 용기에 대해 부과되던 폐기물 부담금이 평균 10배 인상되는 등 대폭 오르게 된다.

환경부는 6월 30일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개당 6~16원하던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는 24.9~84.3원으로 오르며, l 당 30원하던 부동액은 189.8원, 갑당 7원하던 담배는 27.8원, 판매가(수입가)의 0.27%이던 껌은 1.8%로, 개당 1.2원하던 1회용 기저귀는 8.2원으로 부담금이 인상된다.

또한, 개당 1~4.5원하던 화장품용기는 8.3~25.5원, kg당 3.8원~7.6원하던 플라스틱제품은 328원~384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부담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과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화장품용기의 경우는 내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품목으로 적용되 폐기물부담금 부과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동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플라스틱에 대한 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먼저 플라스틱 제품중 실제 재활용되거나 재활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문제로 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하였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또는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사업자가 환경부와 재활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후 이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2단계로 여건이 성숙될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중간제품(제1차 플라스틱 제품 등)과 최종제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플라스틱부담금을 최종제품으로 통일하여 일부 최종제품에 대한 재활용분담금과의 이중부과 가능성과 수출품에 대한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원료투입량(국산제품)과 수입가격(수입제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산출기준도 국내·외 제품간의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 원료투입량으로 일원화하였다. 플라스틱 원료를 연간 10톤 이하 사용하는 사업자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체

를 보호하고 관리상의 편리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관계법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활용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재정적 편익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의 기대에는 경제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부담금 요율인상 및 자발적 협약을 통한 재활용 권장으로 약 110만톤의 플라스틱이 재활용 될 경우 연간 약 1조원의 플라스틱 원료 구입비와 4,000여억원의 폐기물 처리비가 절감되어 총 1조4천여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바탕이 되고 있다.

또한 부담금 인상으로 추가적으로 거둬들이는 금액이 연간 3~5천억원으로 이 같은 추가 자원 확보를 통해 전국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재활용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절차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란?

제품 또는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은 총 21개이며, TV·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금속캔·유리병·합성수지포장재 등 15개 제품·포장재는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형광등·필름류 포장재는 2004년부터, 오디오·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부터,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